

## 제9장 디지털 무역

### 제9.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상업용 전자 메시지란 최소한 전자우편과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규정된 한도에서 다른 유형의 메시지로 구성되는, 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인의 전자 주소로 발송되는 전자 메시지를 말한다.

컴퓨터 설비란 상업적 용도로 정보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컴퓨터 서버 또는 저장 장치를 말한다.

적용대상인이란 다른 쪽 당사국의, 제8.1조(정의)에 정의된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디지털제품이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되며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물 또는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sup>1 2</sup>

전자인증이란 전자 통신 또는 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원을 검증하거나 전자 통신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절차 또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지급이란 지급인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수취인이 수용 가능한 금전상 청구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서명이란 전자 데이터 메시지에 있거나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자적

<sup>1</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디지털제품”은 화폐를 포함한 금융상품의 디지털화된 표현은 포함하지 않는다.

<sup>2</sup> “디지털제품”의 정의는 전자적 전송을 통한 디지털제품의 무역이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또는 상품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당사국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양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형태의 데이터로서 그 데이터 메시지에 관한 서명자를 확인하고 그 서명자가 그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를 승인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전자적 전송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이란 광자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송을 말한다.

핀테크란 금융서비스의 전달과 이용을 개선하고 자동화하는 기술의 사용을 말한다.

개방형 데이터란 자유로운 사용, 재사용 및 재배포에 필요한 기술적·법적 특성을 갖추어 이용 가능하게 된 디지털 데이터를 말한다. 이 정의는 당사국에 의하여 또는 당사국을 대신하여 보유되거나 처리되는 정보에만 관련된다.

개인 데이터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요청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란 수신자의 동의 없이 또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발송되는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말한다.

## 제9.2조

### 적용범위 및 일반규정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이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 디지털 무역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증진하는 체계의 중요성, 그리고 그 이용 및 개발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 회피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이 장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정부조달, 또는

- 나. 제9.16조를 제외하고, 당사국에 의하여 또는 당사국을 대신하여 보유되거나 처리되는 정보, 또는 그 정보의 수집에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그 정보에 관련된 조치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제8장(서비스무역) 및 부속서 8-가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그러한 의무에 적용 가능한,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예외 포함)의 대상임을 확인한다.
5. 제9.4조, 제9.8조 및 제9.9조는 당사국의 조치가 다음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한도에서, 제8장(서비스무역)의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그러한 조치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다.
- 가.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라 만들어진 당사국의 약속에 명시되거나 당사국의 약속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모든 제한 및 조건, 또는
- 나. 제8장(서비스무역)의 의무에 적용 가능한 모든 예외

### 제9.3조

#### 관세

1.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적으로 전송된 콘텐츠를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의 인과 다른 쪽 당사국의 인 간의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내국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이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경우라면, 당사국이 전자적으로 전송된 콘텐츠에 대하여 그러한 내국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 제9.4조

####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 제작, 발행, 계약, 발주되거나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 가능하게 된 디지털제품이나 그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나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자국이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다.<sup>3</sup>
2. 제1항은 제10장(지식재산권)의 권리와 의무에 불합치하는 한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3. 양 당사국은 이 조가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한다.
4. 이 조는 방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9.5조 국내 전자거래 체계

1.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1996) 또는 2005년 11월 23일 뉴욕에서 채택된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원칙과 합치되게 전자거래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 가. 전자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적 부담을 피한다. 그리고
  - 나. 전자거래를 위한 자국의 법 체계의 개발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촉진한다.

### 제9.6조

---

<sup>3</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국의 디지털제품이 “동종의 디지털제품” 인 범위에서, 그 디지털제품은 이 항의 목적상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 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1. 자국의 법에 따라 달리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당사국은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근거만으로 그 서명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인증을 위한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 가.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그 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또는
  - 나.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자신의 거래가 인증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방해하는 조치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정한 범주의 거래에 대하여 인증의 방법이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거나 자국의 법에 따라 공인된 당국에 의하여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인증의 이용을 장려한다.

## 제9.7조

### 전자지급

1. 전자지급, 특히 비은행, 비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전자지급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국경 간 전자지급을 위한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환경을 발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 가. 전자지급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의 채택 및 사용 강화
  - 나. 전자지급 인프라의 상호운용성 및 상호연결성 증진, 그리고
  - 다. 전자지급 서비스에서 혁신과 경쟁 장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 가. 규제 승인, 인가 요건, 절차 및 기술표준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전자지급에 관한 규제를 공개한다.
- 나.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규제 승인 또는 인가에 관한 결정을 시의적절하게 완료하도록 노력한다.
- 다. 전자지급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을 자의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 라. 관련된 전자지급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지급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서비스 공급자 간 전자 데이터 교환을 위한 전자지급 메시지에 대한 국제표준을 채택한다.
- 마.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하여 제공되는 도구 및 프로토콜과 같은 개방형 플랫폼 및 구조의 사용을 촉진하고, 전자지급에서 보다 높은 상호운용성, 혁신 및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경우, 지급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제품 및 서비스용 API를 제3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장려한다. 그리고
- 바. 규제 및 산업 샌드박스 채택과 같은 방식을 통하여, 혁신과 경쟁 그리고 새로운 금융 및 전자지급 상품과 서비스의 도입을 시의적절하게 촉진한다.

3. 제1항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규제를 통하여 전자지급 시스템에서 안전성, 효율성, 신뢰 및 보안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규제 및 정책의 채택과 집행은 지급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위험에 비례해야 할 것임을 인정한다.

##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의 이전<sup>4</sup>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이전에 관하여 자국의 규제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그 활동이 적용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개인 데이터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정보의 이전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 제9.9조

### 컴퓨터 설비의 위치<sup>5</sup>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통신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컴퓨터 설비의 사용에 관한 자국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용대상인에게 그 영역에 있는 컴퓨터 설비를 사용할 것 또는 그 영역에 컴퓨터 설비를 위치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sup>4</sup> 이 조는 금융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sup>5</sup> 이 조는 금융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컴퓨터 설비의 사용 또는 위치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 제9.10조 소스코드

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의 이전이나 그에 대한 접근, 또는 그 소스코드에 표현된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을 자국의 영역에서 그러한 소프트웨어 또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제품의 수입, 유통, 판매 또는 사용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2.    이 조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 기관, 법 집행 기관, 규제 기관 또는 사법 당국(“관계 기관”)이 조사, 수사, 검사, 집행 조치 또는 사법 절차나 행정 절차를 위하여,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무단 공개에 대한 보호장치를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또는 그 소스코드에 표현된 알고리즘을 보존하거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sup>6</sup>

### 제9.11조 개인 데이터 보호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의 경제적·사회적 유익함과 그러한 보호가 디지털 무역에서 소비자의 신뢰 향상에 기여함을 인정한다.

---

<sup>6</sup> 그러한 공개는 영업 비밀 소유자가 영업 비밀로서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 보호를 규정하는 법 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 체계를 개발할 때,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 및 지침을 고려한다.<sup>7</sup>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 데이터 보호 위반으로부터 디지털 무역 이용자를 보호할 때 비차별적 관행을 채택하도록 노력한다.

4.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디지털 무역 이용자에게 자국이 제공하는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표한다.

가. 개인이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 기업이 개인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

### 제9.12조

####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1. 각 당사국은 전자 주소로 발송된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에 관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게 그러한 메시지의 지속적 수신을 방지하기 위한 수신자의 능력을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나.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치, 또는

다.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최소화를 달리 규정하는 조치

---

<sup>7</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사생활 또는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 사생활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법이나 사생활과 관련하여 기업의 자발적 약속 이행을 규정하는 법과 같은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함으로써 이 항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 대한 청구 수단을 제공한다.

3. 양 당사국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규제에 관하여 상호 우려가 있는 적절한 경우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제9.13조

#### 온라인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소비자가 디지털 무역에 참여할 때 사기적이거나 오도적이거나 기만적인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이 조의 목적상, “사기적이거나 오도적이거나 기만적인 행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재료 품질, 가격, 목적에 대한 적합성, 수량 또는 원산지에 대하여 허위 표시하는 것 또는 거짓 주장하는 것

나. 공급할 의도 없이 공급을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

다. 소비자에게 비용이 청구된 후 그 소비자에게 제품이 배달되지 못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또는

라. 승인 없이 소비자의 금융 계정, 전화 계정 또는 그 밖의 계정에 청구하거나 그러한 계정에서 인출하는 것

3. 양 당사국은 온라인 상업 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불러오거나 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사기적이거나 오도적이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법 또는 규정의 채택 또는 유지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4. 양 당사국은 소비자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국경 간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활동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5. 양 당사국은, 적절하게 그리고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을 조건으로, 양국의 소비자 보호법을 집행할 때를 포함하여, 온라인 상업 활동에 대한 사기적이거나 오도적이거나 기만적인 행위와 관련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한다.

6.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청구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안적 분쟁 해결을 포함한 메커니즘의 유익함을 인정한다.

### 제9.14조 사이버보안 협력

1. 양 당사국은 안전한 디지털 무역을 증진하여 전 세계적인 번영을 달성한다는 비전을 공유하며, 사이버 보안이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다음 활동을 촉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가. 컴퓨터 보안 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양국 국가 기관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

나. 양 당사국의 전자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컴퓨터 보안 사고, 악의적 침입, 또는 악성코드 유포 행위 등을 식별하고 이를 완화하는 데 협력하기 위하여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

다. 양 당사국의 전자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협에 관한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을 통하여 사이버 위협에 관한 정보 및 실행 가능한 정밀 분석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유하는 것

라. 양 당사국의 전자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컴퓨터 보안 사고를 공동으로 완화하고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자 또는 다자 메커니즘을 창설하거나 참여하는 것

- 마. 훈련, 워크숍, 세미나, 연구방문 또는 그 밖의 역량 강화 활동의 형태로, 사이버 위협 정밀 분석 정보와 관련된 문제의 수집, 처리 및 추가 분석을 포함하여, 컴퓨터 보안 사고의 탐지 및 취급에 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교환하는 것
- 바. 관련 사이버 보안 기관의 역량에 관한 정보 교환에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것
- 사. 기업과의 소통 방법 및 사이버 회복력을 향상하기 위한 인식 제고 방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공유, 그리고 디지털 사회 구성원들 간 사이버 보안 인식을 높이기 위한 우수 관행의 공유를 포함하여, 사고 대응을 넘어 협력을 확대하는 것

### 제9.15조

#### 디지털 무역을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각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정책과 법 및 규정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소비자가 다음의 능력을 가짐으로써 얻는 이익을 인정한다.

- 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조건으로, 소비자가 인터넷 상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sup>8</sup>
- 나. 소비자가 선택한 최종이용자 장치가 네트워크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그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그리고
- 다. 소비자의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의 네트워크 관리 관행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

### 제9.16조

---

<sup>8</sup> 양 당사국은 자신의 구독자들에게 특정한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가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게 행동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한다.

## 개방형 데이터

1. 양 당사국은 정부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사용의 촉진이 경제적·사회적 발전, 경쟁력 및 혁신을 강화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이 데이터를 포함한 정부정보를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범위에서, 당사국은 그 정보가 개방형 데이터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양 당사국은 사업 기회를 증진하고 창출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개방형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그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제9.17조

### 경쟁 협력

1.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법 집행 및 경쟁 정책의 개발과 이행에 대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 가.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환경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 정책 및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우수 관행을 공유한다.  
그리고
  - 나. 양 당사국의 디지털 시장이 개방적이고 경쟁 가능하며 효율적이다도록 촉진한다.
2. 양 당사국은 협의 및 정보 교환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 문제에 대하여 적절하게 협력한다.

## 제9.18조

### 핀테크 협력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핀테크 산업 간 협력을 증진한다. 양 당사국은 핀테크에 관한 효과적인 협력이 기업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 가. 기업 또는 금융 분야를 위한 핀테크 솔루션의 개발을 증진한다. 그리고
- 나.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합치하도록, 핀테크에서의 양 당사국 간 기업가 정신 또는 스타트업 인재 협력을 장려한다.

### 제9.19조

#### 협력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 가. 다음에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제, 정책, 그리고 집행 및 준수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경험 공유
  - 1) 개인 데이터 보호
  - 2) 온라인 소비자 보호
  - 3)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 4) 전자 통신상 보안
  - 5) 전자인증, 그리고
  - 6)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
- 나.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접근에 관하여 양 당사국 간 정보 교환 및 의견 공유

- 다. 디지털 무역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 다자 및 국제 포럼에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 라. 행동규범, 모범계약, 지침 및 집행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디지털 무역을  
강화하는 업계별 자율규제 방법의 개발 장려